

의안번호	제 341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7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6월 30일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1
----------	-----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30일
발의자 : 김종필, 이동우,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소방안전과 응급처치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 효율적인 구조활동으로 도민의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 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라. 교육계획 수립, 교육실시, 교육내용, 강사자격, 교육장 운영과 수료증 발급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교육의 접근성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바. 교육 관련 분석평가 등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 교육시행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교육활동 장려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아. 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4.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
화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안전취약계층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실시) ①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과 응급환자
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과 안
전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안전취약계층 집중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
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중교육을 실시·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중교육의 실시·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교육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재 및 안전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

제8조(강사의 자격)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을 따른다.

② 제5조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제9조(교육장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체험시설을 갖춘 충북안전체험관 또는 충청북도 내 소방서 등에 소방안전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수료증 발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장려)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교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홍보) ①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제7조 관련)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1. 화재예방 및 대피, 행동 방법 2.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설비 사용법	이론 및 실습	0.5시간
1. 응급처치 등 활동내용 및 응급의료 관련 법령 2. 응급처치 등 활동 시의 안전수칙	이론	0.5시간
1. 기본응급처치요령 및 심폐소생술	실습	1시간

비고

1. 도지사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제0000-0000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성명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위 사람은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직인

91mm×128mm

(인쇄용지(특지) 120g/㎡)

관계법령

□ 소방기본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 ① <생략>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행동 방법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생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21. 12. 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 략>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이하 “교육·홍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8. 9. 18.,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1. ~ 9의2. <생 략>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1. 17.>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생 략>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충청북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
-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활동에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도민 대상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
-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교육 지원

3. 관련조문

- 안전취약계층 집중교육 지원(제6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도민 및 안전취약계층의 소방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 ~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다. 추계결과 : 450,000천원

- 소방안전체험 차량 및 물품지원 등 : 300,000원(年 60,000천원)

: 충북안전체험관 이용, 어르신(65세 이상,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 대상) 소방안전체험 이동 전세버스 임차, 식사 및 간식 등 지원

- 소방안전체험 배상책임보험 : 25,000천원(年 5,000천원)

: 어르신 소방안전체험 이용 기간 배상책임보험(체험 중 상해 발생)

- 화재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재 제작 : 125,000천원(年 25,000천원)

: 어르신 소방안전교육용 소방안전교재 제작 및 배부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소방안전체험 차량 및 물품지원 등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소방안전체험 배상책임보험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화재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재 제작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재원 조달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자체 수입	소 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지방세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